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상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정, 2016. 8. 1. 시행)으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상법 시행령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흠결을 정비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함으로써 적법한 감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여 준법경영 정착 및 공정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 법령 변경(안 제37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감사위원회) ① (생 략)	제37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 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 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 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 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 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 락 처	(02) 2110 - 3635